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람

기관
의
장

제1879호 2024. 11. 4.(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_____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8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_____ 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_____ 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9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_____ 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_____ 1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9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_____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_____ 2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조례
_____ 2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96호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_____ 2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9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_____ 3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98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99호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01호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	4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5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6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08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	6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1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7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1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7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5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78

제187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1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18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리플릿 및 팸플릿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공개 대상) 총 행사 예산이 5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제4조(공개 내용)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제5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한다.

제6조(표기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다음 년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년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1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조제1항제4호 중 “법인”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2.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3. 공공단체: 법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선정을 위한 해당 동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장

2.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동 소재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장이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천하거나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주민자치회”를 “선정위원회”로,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를 “예비후보자”로,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하는 해당 동 소재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주민자치회”를 “선정위원회”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생한”을 “발생하였거나 제6조의 정수 충원을 위해 신규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임”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1항부터 제5항”을 “제1항부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위원중 호선하거나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을 “위원 중 호선하거나 서구”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 전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중이거나 위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제7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및 제8조 위원의 선정 등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19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관련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 관련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공모전)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답례품 관련 공모전, 기금 관련 공모전 등 각종 공모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7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1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⑭ 구청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때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배우자 동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19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를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대부료등의 납기)”를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이내 분납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6조 관련)

1.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구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원
구분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청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명		설계기준					비고
회의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명	200명이상시 면적 = 0.8m ² ×사용인원	
	4~2.4m ² /인	2.6~1.5m ² /인	2~1.2m ² /인	1.6~1m ² /인	1.2~0.9m ² /인		
상황실	구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m ² / 인	0.40m ² / 인	0.33m ² / 인			
	엘리베이터	(12.87~19.6m ²) × 대수					
식당		1.63m ² × 공무원 수 × 0.3					
휴게실		2.0m ² × 공무원 수 × 0.15					
민원실		{(6.55m ² ×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m ² ~0.2m ² ×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직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 ² / 인	11.52m ² / 인	8.64m ² / 인				
자료실		(0.3~0.4m ²) × 공무원수					
창고		0.72m ² /인 ~ 0.85m ² /인					
전산실		9.79m ²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 ²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 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층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2. 의회 청사

(단위 : m²)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구 위원회 수 : 3개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m ² 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m ²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m ²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m ²		
		사 무 실	직원 수 × 7.2m ²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m ²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m ²	
			기 자	50m ²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m ²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m ²	
			직 원	직원 수 × 2m ²	
			방청객	방청객 수* × 2m ²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m ²		
		화 장 실	시 : 45~47m ² 균 : 36~77m ² 구 : 44~46m ²		
		기 타	예비실(50m ²)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바·복도·계단	(a + b + c) × 3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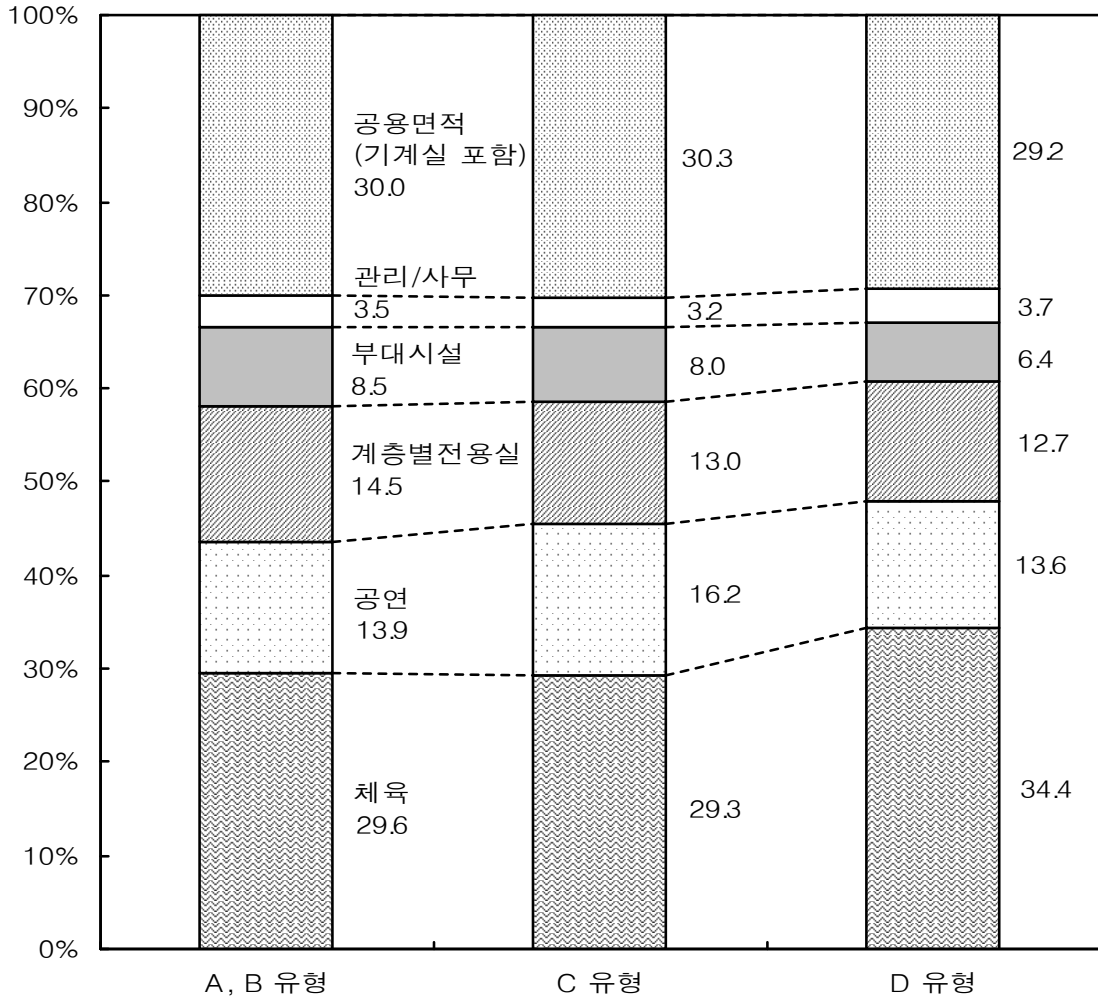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종합회관

가. 인구 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구	수용시설설정
A	30-5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㉓	343	309	231	148
합 계	계 ㉓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m²)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시 보건소
진료 활동	a	접수 / 수납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48.00
		약국조제실	13.86
		약국창고	13.86
		일반진찰실	53.46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인용 화장실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상담실	35.64
		방사선실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 무 부 문	d	소장실	33
		전실(탕비실)	9.90
		소회의실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m ²
		다목적실	144
		창고	59.4
		여자휴게실	40
		당직실	13.86
		화장실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1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1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

• 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과정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6조(포상금 등)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

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 2. 제6조제2항의 대상으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4.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196호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구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지원)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879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11. 4.(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19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비상설 운영위원회로 둔다”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제1항 중 “둔다”를 “비상설 실무협의회로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공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7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024. 11. 4.(월)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198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199호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5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성이 있는 제3자의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한 자를 말한다.
2. “저소득 복지대상자”란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에 포함한다),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3. “서구사랑상품권”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출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주요 추진 사업
3.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4.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

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저출산 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저출산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저출산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제4조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저출산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 3. 저출산 정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저출산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1.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 3. 저출산 정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저출산 대책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 친화 사업 지원
- 2. 다자녀 가정 지원(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3.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 4.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 ① 구청장은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보호자가 저소득 복지대상자인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을 출산축하용품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제10조(지원기준)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서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자로 한다.

1. 부 또는 모

2.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④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영유아 1명당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의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1.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실시할 경우
2. 저출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출산축하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극복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하금 지원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3조의 축하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경우 보호자에게 지원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5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제1879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24. 11. 4.(월)
기간 안에 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지원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
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축하금, 산후조리비 지원의 미신청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신청자는 종전의 제8조 규정에 따라 축하금,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있다.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01호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지원계획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1인가구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4.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5.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을 말한다.
6.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연환경조사)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하천·공원·습지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 2.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 3. 식생현황
-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연환경조사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 전문가나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7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시
3.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유
4.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출입 제한)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에 필요한 행위

2. 자연환경조사 또는 실태조사

3.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천재지변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5.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 방법,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사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2. 야생생물 보호에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3.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많은 사람

②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 구청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및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념식 또는 행사
2.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
4.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879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 11. 4.(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구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응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제8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 또는 제공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조”를 “제31조의2”로, “재난”을 “안전”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재난”을 “안전”으로 하고, “둔 사람을”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를”로 한다.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

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고
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재난”을 “안전”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을 “안전”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용품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난”을 “안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개선의 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879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11. 4.(월)

요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 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관리동 전기요금
-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를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의2”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CCTV)”를 “(CCTV), 보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한다.

5. 자동화재탐지설비·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설치 및 보수

제5조제1항 본문 중 “10년”을 “20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년이”를 “20년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공동주택업무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879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24. 11. 4.(월)
중 “^{제1879호}실(과)장과”를 “부서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등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구보}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등에게는 「^{2024. 11. 4.(월)}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위원의 제적·기피·회피)”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관리담당”을 “공동주택 업무담당”으로, “업무”를 “공동주택 업무”로 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
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7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구보 2024. 11. 4.(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39조의2”를 “제3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건축물(단,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08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의”를 “보건소”로 한다.

제3조 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개정」”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개정」”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개정」”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수료 등)”을 “(증명발급 수수료)”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법 제41조”를 “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3자녀 이상 가족”을 “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제9조의 제목 “(납부 및 정산)”을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납으로 한다”를 “당일에 납부한다”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타수가(제6조제1항 관련)

종목	기준	수수료	비고
치면열구전색 (치아홈메우기)	1치아당	5,000원	건강보험대상 (제1,2대구치) 치아 제외
불소도포	전체치아	5,000원	
유료접종 (B형간염)	성인	약품의 최근 구매한 단가에 500원을 더한 가격	십원단위는 절사
유료검사 (B형간염항체검사)	전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의 보건기관단가 70% (매년 고시가에 따라 변동함)	십원단위는 절사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건강진단서	1통	1,000원	
2. 기발급 증명서 재발급	“	500원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6,000원	수수료 50% 감액대상 1.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영업장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등)를 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장에게 제출
4.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	300원	
5.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	1,000원	

재직(예정) 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직(예정) 사항	소속(예정)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주소	
영업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업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

귀하

안내 및 유의 사항

-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187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2024. 11. 4.(월)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75세”를 “70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접종종류 및 지원기준)”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고,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에게”를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로 한다.

제4조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1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과 서구청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시에는 요구 내용에 합당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3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서면 또는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1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공무원에게 배우자 동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21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93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11.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4-11-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29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93 (석남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견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주)김종구참푸드
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86-16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2로 57 (당하동)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두번째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1-317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66-48 (백석동)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4-215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공 고 기 간 : 2024. 11. 04. ~ 2024. 11. 19.(16일간)
-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238더8807 등 10건 (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1,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1)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238더8807	BMW 520d xDrive Luxury	하**	2024.10.02
2	48다1069	E300	하**	2024.10.11
3	33소2386	제네시스(GENESIS)	장**	2024.10.11
4	01보5784	K7	박**	2024.10.14
5	133주8428	CHEVROLET CAMARO	하**	2024.10.22
6	88러0122	C35 S5	김**	2024.10.25
7	02부0887	아반떼(AVANTE)	정**	2024.10.28
8	인천83다3993	포터초장축슈퍼캡	김**	2024.10.29
9	266라3678	파나메라 GTS	하**	2024.10.30
10	87나8151	봉고III 1.2톤	박**	2024.10.31